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697호

의 안 명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의 결 일 2023. 8. 7.

주 분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은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17개)의 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8월 7일

위원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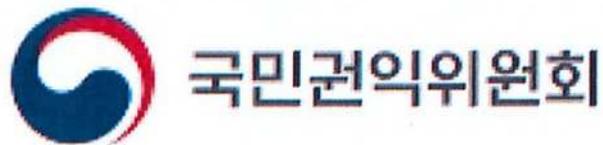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지>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2023. 8.



A O B C

순서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5
1.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누락 점포 방치	5
2. 화재 위험 점포의 개선 소홀	6
3.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소홀	8
4.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화재 위험 점포 누락	9
5.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 미흡	11
6.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화재 위험 방치	13
IV. 개선방안	14
1.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누락 방지	14
2.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관리 강화	14
3.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화재 위험 점포 누락 방지	15
4.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 강화	15
5. 사업자 미등록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 독려 방안 마련	16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7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 전기안전점검 시 전통시장 점포 중 상당수가 점검에서 누락되거나, 화재 위험 점포(E등급)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 발생

-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안전 정기점검 실시율은 '21년 88.8%, '22년 91.1%로 매년 약 10%가 전기안전점검 누락
- '22년도 안전점검 결과 E등급 점포 전체 3705개 중 1849개(49.9%)가 미개선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 중
 -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사업 시행이 가장 필요한 화재 위험 점포(E등급)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장 단위로 선정

- 시장 상인회가 개별 점포의 신청을 취합하여 시장 단위로 신청
- 화재 위험성으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E등급 점포가 사업 신청을 한 경우에도 시장 미선정시 사업에서 제외

- 이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23. 1. ~ '23. 4.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23. 4. ~ '23. 7.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3. 7. ~ '23. 8.

II. 제도 현황

①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254건(연평균 50.8건)

※ 화재발생 추이 : ('17년) 31건 → ('19년) 46건 → ('21년) 57건

○ '21년 전통시장 발생 화재 57건 중 전기적 요인이 27건으로 전체의 47.4%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화재요인별)>

구분	계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부주의	기타
화재발생 요인	57건	27건	5건	1건	20건	4건
	100%	47.4%	8.8%	1.7%	35.1%	7.0%

1. 전기적 요인 : 누전, 단락, 과부하/과전류, 단선 등

2. 기계적 요인 : 과열/과부하, 정비불량, 노후 등

3. 화학적 요인 : 화학적 폭발, 화학적·자연발화 등

4. 부주의 : 담배꽂초, 음식조리중 발생, 전기·기계 등 사용 부주의 등

5. 기타 : 자연재해, 방화, 원인 모름 등

<자료출처 2021년도 화재통계연감>

□ 전통시장 화재 피해 현황

○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총 838억 원, 건당 약 3억 3천만 원으로 전체 화재 대비 약 18배 수준

※ 최근 5년간('17년~'21년) 전체 화재에 대한 재산피해액은 건당 1,800만 원 수준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전체	건당
계	254	20	83,771,508	329,809
2021년	57	2	994,677	17,450
2020년	65	3	2,849,983	43,845
2019년	46	12	76,589,196	1,664,982
2018년	55	2	1,224,666	22,266
2017년	31	1	2,112,986	68,160

<자료출처 : 2017년~2021년 화재통계연감>

②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 전기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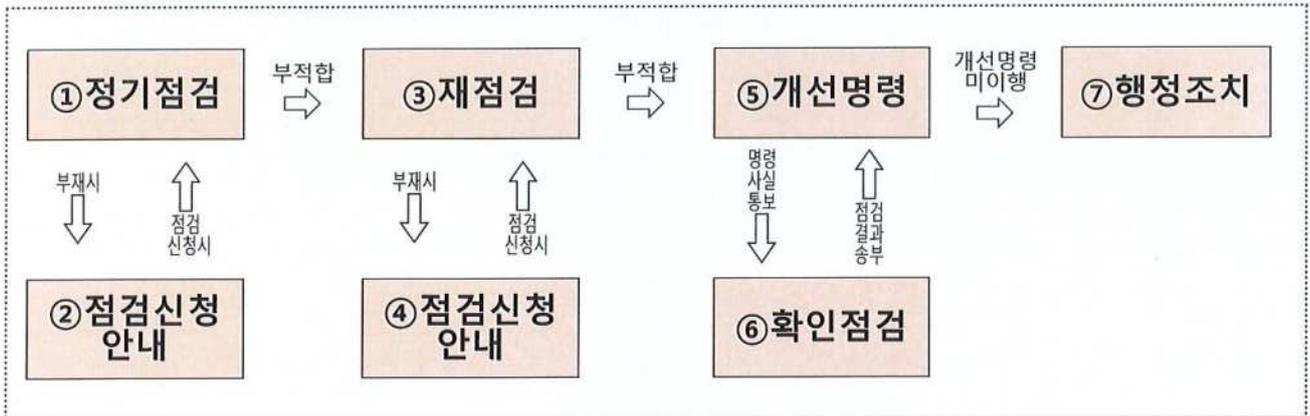
-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라 한다)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1년 주기로 전기 안전점검 실시

※ 분전반,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E등급으로 판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전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등급	기준
A(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
B(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C(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
D(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
E(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 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

□ 전기안전점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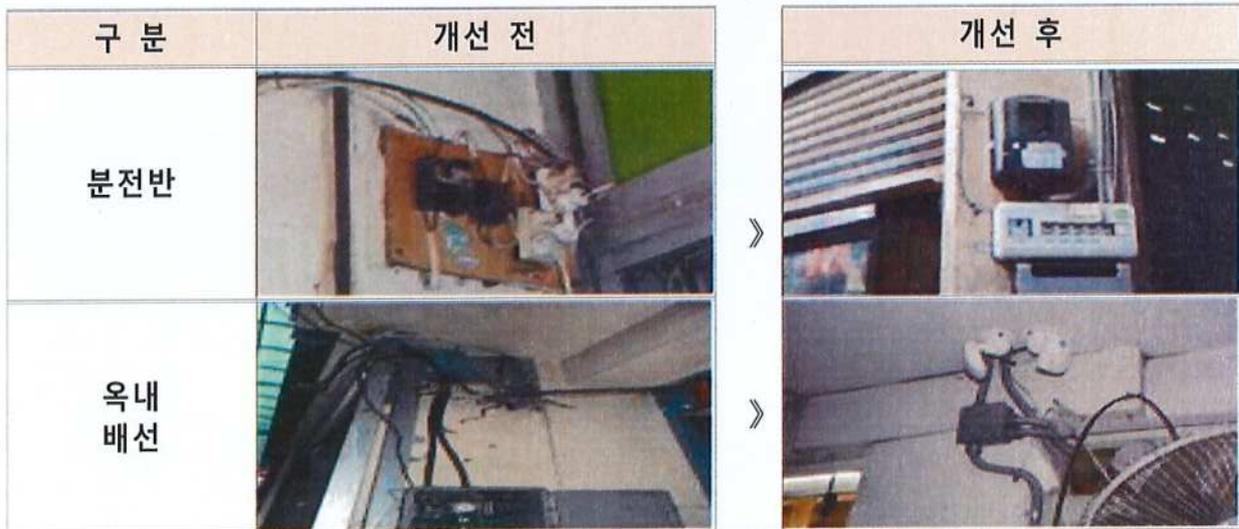


- ① 정기점검 : (점검 주체) 전기안전공사. 전 점포 대상
- ②, ④ 점검신청 안내 : 점검 시 부재 점포에 대해 신청 방법 안내
- ③ 재점검 : (점검 주체)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부적합 점포 대상, 부적합 점포 지자체 통보
- ⑤ 개선명령 : 지자체→점포
- ⑥ 확인점검 : (점검 주체) 전기안전공사.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 사실이 통보된 점포에 대해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 ⑦ 행정조치 : 지자체→점포. 개선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전기공급중단 등 조치

③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사업목적)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를 정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
- (지원내용) 시장당 국비 5억 원 이내에서 신청 점포 수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로 한정, 1개 점포당 국비 지원 한도는 125만 원(최대 250만 원)
 - ※ 예산(국비) : ('20) 60억 원 → ('21) 57.4억 원 → ('22) 105억 원
 - ※ 정비 점포 수 : ('20) 6,363개 → ('21) 7,557개 → ('22) 10,790개

<정비사업 시행 예시>



<정비사업 시 개선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 불연·난연성 전선관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전등기구 교체 ■ 화재 예방 관련 간접시설 등

- (신청방법) 개별점포 → 상인회 → 시군구 → 지방중소기업청
 - 개별점포별 신청은 불가, 상인회가 점포의 신청을 취합하여 시장 단위로 지자체에 신청
 - 신청 점포 수가 영업점포 수의 30%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

Ⅲ. 문제점

1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누락 점포 방치

□ 전기안전점검 누락 점포 지속 발생

- 전기안전공사는 매년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전국 전통시장 점포 중 약 10%*는 전기안전점검에서 누락

* '21년, 2만여 개 점포(11%), '22년, 1만 6천여 개 점포(9%)는 점검 당시 상인 부재를 이유로 전기안전점검에서 누락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점검 대상(점포 수)	점검	미점검
2021년	181,574*	161,525	20,450
		88.9%	11.1%
2022년		165,814	16,161
		91.3%	8.7%

* 전국 1,408개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점포 수입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기안전점검 누락 점포 방치

- 전기안전점검 누락 점포에 대한 적극적인 2차 점검 절차 부재
- 상인이 전기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만 2차 점검이 가능하여, 상인의 미신청으로 인한 점검 누락 상태 방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방법(전기안전공사 업무매뉴얼)]

- 전기안전점검 시 소유주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여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전기안전점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종결하도록 규정

2 화재 위험 점포의 개선 소홀

□ 전통시장 화재 위험 점포 지속 발생

- 전기안전공사는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대한 전기설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A(우수)등급부터 E(위험) 등급으로 판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전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등급	기 준
A(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
B(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C(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
D(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
E(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 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

- 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결과,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화재 위험 점포인 E등급을 받은 점포는 전체의 2~3%* 수준으로 매년 발생

* '21년, 4,775개 점포(3%), '22년, 3,705개 점포(2%)가 E등급을 받음

[화재 위험 점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점검 대상(점포수)	점검	E(위험) 등급
2021년	181,574	161,525	4,775
			3.0%
2022년		165,814	3,705
			2.2%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화재 위험 점포의 개선 미흡

- 화재 위험 점포로 판정된 경우, 상인은 위험 요소에 대하여 즉시 개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미개선 상태로 방치

* E등급 판정 점포 중 '21년은 1,748개 점포(36.6%), '22년은 1,849개 점포(49.9%)는 위험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방치

[E등급 판정 점포의 화재 위험 요소 개선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E등급 판정	개선	미개선	미확인*
2021년	4,775	2,803	1,748**	224
	100%	58.7%	36.6%	4.7%
2022년	3,705	1,750	1,849	106
	100%	47.2%	49.9%	2.9%

* 전기안전공사가 상인 부재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포

** '21년도 미개선 점포 1,748개 중 942개 점포(53.9%)는 '22년까지 2년간 위험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체 점포의 80% 이상이 2년간 화재 위험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 존재

[E등급을 받은 점포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는 주요 시장]

- (부산 ○○시장) '21년 점검에서 전체 604개 점포 중 556개 점포(92.1%)가 화재에 취약한 비닐코드배선 사용을 사유로 E등급을 받음. '22년 점검에서 위 556개 중 513개 점포(84.9%)가 '21년과 동일한 사유로 E등급 판정을 받음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3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소홀

□ 화재 위험 점포에 개선 명령 미흡

- 지자체는 화재 위험 점포의 즉시 개보수를 위해 개선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있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개선명령 시행률은 '21년 28.3%, '22년 44.0%에 불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8항]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⑧ ...(중략)...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이하 생략)

[지자체의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시행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개선대상	개선명령	시행률
계	8,480	3,037	35.8%
2021년	4,775	1,351	28.3%
2022년	3,705	1,631	44.0%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기안전공사와의 협업 미흡

- 지자체는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시 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있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1~'22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개선명령 시 관련 사실을 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한 비율은 5.6%에 불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화재 위험 점포 누락

□ 화재 위험 점포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대상 선정 방식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개별점포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등에 대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실시

[노후전선 정비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목적)**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를 정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
- **(지원내용)**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로 한정, 1개 점포당 국비 지원 한도는 125만 원 (지방비 포함 최대 250만 원)
※ 예산(국비) : ('20) 60억 원 → ('21) 57.4억 원 → ('22) 105억 원
- **(신청방법)** 개별점포 → 상인회 → 시군구 → 지방중소기업청
 - 개별점포별 신청은 불가, 상인회가 점포의 신청을 취합하여 시장 단위로 지자체에 신청
 - 신청 점포 수가 영업점포 수의 30%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

- 노후전선 정비사업 대상 선정 시 사업 시행이 가장 필요한 E등급 점포에 대한 고려 없이 신청한 시장 단위로만 평가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노후전선 정비사업 대상 선정방법]

- **(현장평가)** 해당 시장의 신청 점포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단위로 점수 부여(70점)
- **(서면평가)** 사업지원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 평가, 시장 단위로 점수 부여(30점)
- 전기안전점검 E등급을 받은 화재 위험 점포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신청한 시장 단위로만 평가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화재 위험 점포 누락 발생

- '22년도 전기안전점검 결과 최종 E등급 판정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770개 점포(41.7%)는 화재 위험 점포임에도 노후전선 정비사업 미시행

[22년 화재 위험 점포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행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시행	미시행	미확인*
2022년	1,849	970	770	109
	100%	52.4%	41.7%	5.9%

*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미비 등으로 정비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포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신청 화재 위험 점포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

* 해당 시장이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장의 화재 위험 점포가 신청하였음에도 사업대상에서 누락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 (광주 ○○시장) 시장 내 4개 점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21년~'22년 연속으로 E등급을 받았음. 그러나 시장이 E등급 점포를 포함하여 '22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시장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E등급 점포 개선 누락
- (경남 ○○시장) 시장 내 2개 점포는 '20년도 전기안전점검 결과 E등급을 받았음. 그러나 시장이 E등급 점포를 포함하여 '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시장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E등급 점포 개선 누락
- (강원 ○○시장) 시장 내 16개 점포는 '21년도 전기안전점검 결과 E등급을 받았음. E등급 점포들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상인회에 신청하였으나, 사업 신청 점포가 시장 전체 영업점포의 30%를 넘지 않아 해당 시장 상인회가 사업 신청을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5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 미흡

□ 사업 시행 후에도 화재 위험 미개선

○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이후 전기안전점검에서 E등급을 받는 사례 발생

※ '22년도 전기안전점검 결과 최종 E등급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970개 점포(52.4%)는 전기안전점검 이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E등급을 받음

[22년 화재 위험 점포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행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시행	미시행	미확인
2022년	1,849	970*	770	109
	100%	52.4%	41.7%	5.9%

* 970개 점포에 약 24억 원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전기안전점검 결과 E등급을 받음

산출 근거 : 250만 원(점포당 지원 한도) × 970개소 = 24.25억 원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설계나 시공상의 잘못 등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화재 위험 요소 미개선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행 이후에 E등급 판정을 받은 사례]

- (설계상 잘못) 경남 ○○시장 내 23개 점포는 '21.6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설계상 잘못으로 '22년 점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음.
- (시공상 잘못) 서울 ○○시장 내 858개 점포는 '22. 7~10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시공상 잘못으로 '22년 점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음
- (시공상 잘못) 광주 ○○시장 내 2개 점포는 '21. 4~7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시공상 잘못으로 '22년 점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음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기안전공사와의 협업 미흡

-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설계자문이나 시공 후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전기안전공사에 설계자문이나 시공 후 검수를 요청한 사례 없음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 상 권장사항으로 규정]

-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에는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 전기안전공사가 설계자문이나 시공 후 검수를 할 경우 화재 위험 요소 개선 누락 및 개선 여부 확인이 가능하여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 가능

- 노후전선 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시 전기안전공사의 기존 전기안전점검 결과 활용 미흡

-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노후전선 정비사업 현장평가 시 전기안전공사의 개별점포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한 사례 없음

[현장평가 관련 규정 등]

- (현장평가단)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전기 안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전문가 : 전기안전공사 직원, 한국화재보험협회 직원 등
- (현장평가 항목) 9개 항목, 70점 만점
- 인입선 점검(10점), 분전함 점검(10점), 누전차단기 점검(10점), 개폐기·차단기 점검(10점), 전기배선 점검(10점), 부하설비 점검(5점), 접지 점검(5점), 전기 설비 설치환경(5점), 기타사항(5점)
- 전기안전공사 담당자 면담 결과, 현장평가 시 기존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현장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6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화재 위험 방치

□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노후전선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

- 점포가 밀집되어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시장 전체 점포에 대한 화재 예방이 필요함에도 사업자 미등록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

- 노후전선 정비사업 법령에는 사업자등록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사업공고문 상 첨부된 사업신청서 양식에서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만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미등록 점포를 제외하고 있음

□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화재 위험 방치

- 사업자 미등록 점포는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화재 안전 관련 사업에서 제외되어 화재 위험 상태 방치

* 노후전선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서도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 비율이 2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소홀

[전통시장 내 점포의 사업자등록 현황]

- 전통시장 점포의 사업자등록률 : ('20년) 81.6% → ('21년) 78.3%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자등록률	83.0	83.7	81.6	78.3

('23. 1~3월, 권익위 실태조사)

IV. 개선 방안

1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누락 방지

□ 누락 점포에 대한 점검 절차 강화

○ 1차 전기안전점검 누락 점포에 대한 2차 점검 절차 마련

※ 상인 부재 시 안내·종결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추가 점검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개정

2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관리 강화

□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강화

○ 지자체의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강화

※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전기공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 자발적 개선 유도

⇒ (지방자치단체) 전기안전점검 사후관리 강화 계획 등 수립

□ 전기안전공사와 협업 체계 구축

○ 지자체의 개선명령 시행 시, 그 사실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통보하여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 전기안전점검 사후관리 강화 계획 등 수립

3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화재 위험 점포 누락 방지

□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 체계 도입

○ 화재 위험 점포와 그 외 점포를 구분하여 사업 시행

※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사업 신청, 사업대상 최우선 선정 등

⇒ (중소벤처기업부)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 개정

4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 강화

□ 전기안전공사의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 의무화

○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전기안전공사의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

※ 전기안전공사는 지자체의 요청 시 자문 및 검수 이행

⇒ (중소벤처기업부)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 개정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개정

□ 현장평가 시 전기안전점검 결과 활용

○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시 기존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 개정

5 사업자 미등록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 독려 방안 마련

□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안내 시 사업자등록 독려

○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안내 시 미등록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시 사업참여가 가능함을 적극 안내·홍보하는 등 사업자등록 독려

※ 사업안내서 배포 및 사업설명 시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사업자등록 유도

⇒ (중소벤처기업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독려 방안 마련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중소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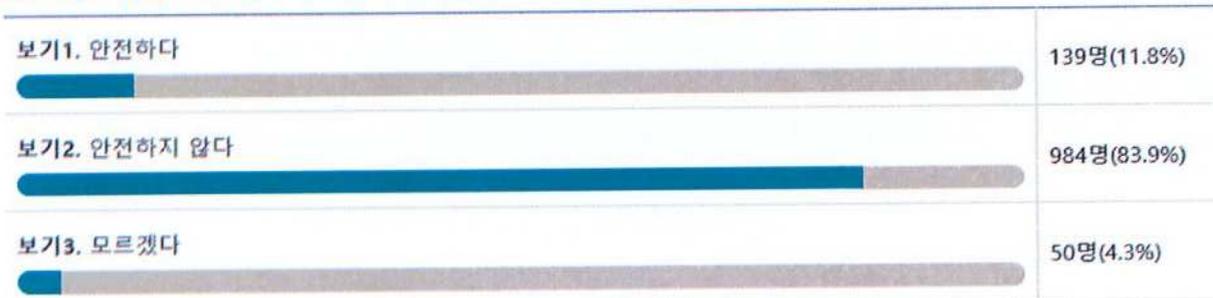
구 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조치기한)
①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누락 방지	○ 누락 점포에 대한 점검 절차 강화 - 1차 전기안전점검 누락 점포에 대한 2차 점검 절차 마련	한국전기안전공사 (2023.12.31.)
②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관리 강화	○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강화 -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전기공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 자발적 개선 유도	지방자치단체 (2023.12.31.)
	○ 전기안전공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 개선명령 시행 시 그 사실을 전기안전공사로 통보	
③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화재 위험 점포 누락 방지	○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 체계 도입 - 화재 위험 점포와 그 외 점포를 구분하여 사업 시행 *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사업 신청, 사업대상 최우선 선정 등	중소벤처기업부 (2023.12.31.)
④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 강화	○ 전기안전공사의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 의무화 * 전기안전공사는 지자체의 요청 시 자문 및 검수 이행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2023.12.31.)
	○ 현장평가 시 전기안전점검 결과 활용 -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시 기존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	
⑤ 사업자 미등록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 독려 방안 마련	○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안내 시 사업자등록 독려 - 사업 안내 시 미등록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시 사업참여가 가능함을 적극 안내·홍보하는 등 사업자등록 독려 * 사업안내서 배포 및 사업설명 시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사업자등록 유도 등	중소벤처기업부 (2023.12.31.)

□ 의견수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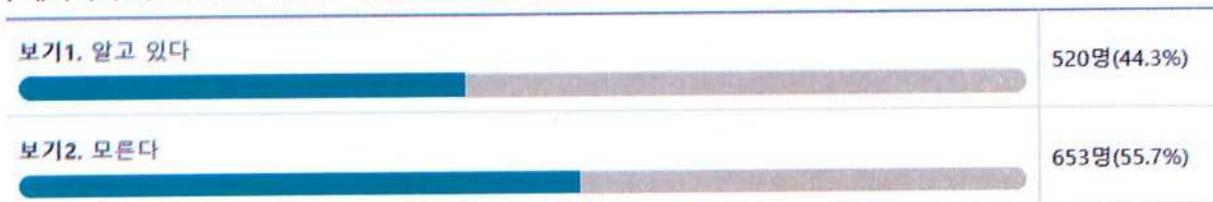
- 목적 : 제도개선 추진 관련 국민 의견수렴
- 주제 :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각지대 방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간 : '23. 7. 5.(수) ~ 7. 14.(금) / 10일
- 참여방식 및 참여인원 :  국민생각함 설문방식, 1,173명 참여

□ 의견수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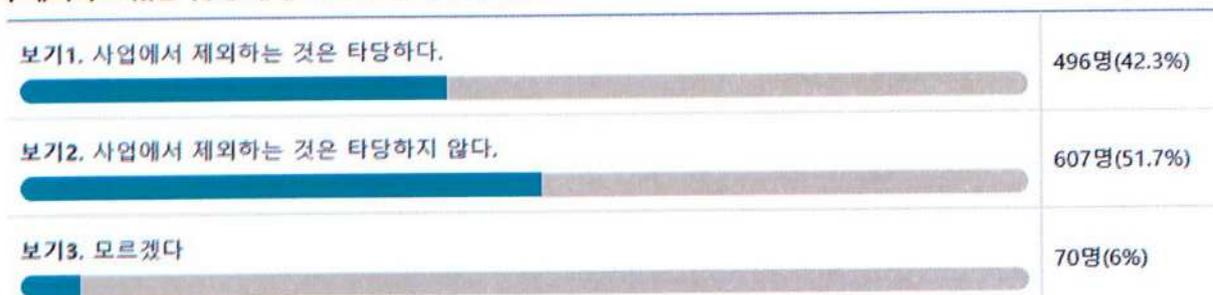
질문 1. [필수] 귀하께서는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2. [필수]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점포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 화재 예방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질문 3. [필수]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점포를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 화재 예방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8.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⑥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⑧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선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2조·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성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다목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시설. 다만,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사중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시설

차. 「농개법」 제22조에 따라 동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소리원 시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시설

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8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屋內)·옥외(屋外)·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2조·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

점검 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인입구 배선 및 옥내· 옥외·건물쪽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전선의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개 폐 기 (차 단 기 를 포함한다)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
접지	○접지저항은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일 것 ○접지극,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시공방법 적정여부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비 고: 점검기관은 절연저항(누설전류) 등 점검 항목에 대해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기 준
A(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B(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
C(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
D(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것
E(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처리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매뉴얼]

제3장 정기점검 업무

4. 업무처리

4.3. 점검결과 처리

4.3.4. 부재고객 처리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로 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 부재고객

- ① 정기점검 시 부재인 고객은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전기안전점검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 ② 점검 가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 및 접지저항 측정 등) 점검 및 기록한다.
- ③ 방문 시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부재로 입력하고 [부재종결] 처리한다.

(2) 재점검 부재고객

- ① 재점검 기한은 정기점검 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방문 예정일을 안내한다.
- ② 2차 방문 시에도 부재인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부재로 입력 후 점검을 끝낸다.
- ③ 부재로 인한 점검종결 후에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검 신청이 있을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점검으로 재점검을 처리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용을 단정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장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용,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기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소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정 본 입 니 다 .

2023. 8. 17

국 민 권 의 위 원 회

